

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2019. 7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07. 11. 강남구청장(어르신복지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7. 18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자 : 복지생활국장 이광우)

- 도심형 종합복지시설인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내 마지막 단계로 건립중에 있는 세곡동 커뮤니티 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
『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
- 필 요 성 : 세곡동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『세곡동 커뮤니티센터』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

- 데이케어센터 운영
-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강남구 세곡동 521-1일대
- 대지면적 : 3,943.90㎡
- 신축규모 : 지하1층~지상2층(연면적 3,847.27㎡)
- 지원시설

구분	주요시설	시설면적	사업내용
2F	·중강의실(42석) ·소강의실(12석) ·작은도서관 ·북카페 ·독서실(11석) ·사무실 ·헬스장 ·샤워목욕탕(남) ·샤워목욕탕(여) ·공용공간	111.12㎡ 35.10㎡ 69.86㎡ 68.16㎡ 21.82㎡ 35.32㎡ 140.25㎡ 62.33㎡ 63.78㎡ 330.3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1F	·데이케어센터 (정원40명)	409.77㎡	전문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, 데이케어센터 운영
	·다목적강당(130석) ·공용공간	117.62㎡ 483.4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 운영
	·카페	13.53㎡	강남구 자활기업, 카페운영
B1	·다목적체육관 ·기계실 ·전기/발전기실 ·지하주차장(29면) ·공용공간 ·중앙제어실	190.86㎡ 168.75㎡ 152.09㎡ 1,054.17㎡ 293.99㎡ 24.93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계		3,847.27㎡	

■ 건물 조감도 및 위치도

	
<p><건물 전경></p>	<p><위치></p>

마.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

사업명	수탁자 선정방식	운영기간	근거법률	비고
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(강의실, 도서관, 북카페, 헬스장, 다목적체육관 등)	비영리법인 (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)	5년	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-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호	관리 위탁
데이케어센터 운영	전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(공개모집)	5년	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	민간 위탁
카페 운영	강남지역자활센터 (수의)	5년	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	협약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위탁예산 : 838,841천원(구비100%, 2020년 연간운영비 예상)

-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위탁관리 : 2019.9월 준공 예정으로 3개월분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, 계약 3개월 지연으로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집행사유없음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인건비 (7명)	운영관리비			유지보수비	비고
			시설관리용역(7명)	일반운영비	시간강사비		
연간운영비	838,841	236,373	278,268	103,400	176,800	44,000	예상
2019.10~12월	170,869	58,280	60,237	20,286	27,066	5,000	집행사유없음

- 데이케어센터 : 시설이용자 수가 운영으로 예산 불필요
- 카페 : 취약계층의 고용 확보를 위하여 무상임대로 예산 불필요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○ 관련법규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,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상원)
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‘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’, ‘데이케어센터 운영’, ‘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’ 등으로 위탁운영 개요는 아래와 같은 바,

구분	주요시설	시설면적	사업내용
2F	·증강의실(42석) ·소강의실(12석) ·작은도서관 ·북카페 ·독서실(11석) ·사무실 ·헬스장 ·샤워목욕탕(남) ·샤워목욕탕(여) ·공용공간	111.12㎡ 35.10㎡ 69.86㎡ 68.16㎡ 21.82㎡ 35.32㎡ 140.25㎡ 62.33㎡ 63.78㎡ 330.3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1F	·데이케어센터 (정원40명)	409.77㎡	전문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, 데이케어센터 운영
	·다목적강당(130석) ·공용공간	117.62㎡ 483.4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 운영
	·카페	13.53㎡	강남구 자활기업, 카페운영
B1	·다목적체육관 ·기계실 ·전기/발전기실 ·지하주차장(29면) ·공용공간 ·중앙제어실	190.86㎡ 168.75㎡ 152.09㎡ 1,054.17㎡ 293.99㎡ 24.93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계		3,847.27㎡	

각 주요 시설에 대한 필요 인력수(업무내용), 공간배치 현황,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 산출(근거 및 내역), 예상 이용자 수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

- 또한, 민간위탁 동의 이후의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도 필요하며, 향후 시설명칭의 명명 계획에 대한 설명도 요구됨
- 아울러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1)제4조제2항의 각 호와 연계 설명도 필요해 보임
- 이에, 본 건은 위탁 운영의 필요성,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

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 의: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 위탁할 시설은 몇 개인지
- 답 변: 위탁 범위는 ‘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’, ‘데이케어센터 운영’, ‘카페 운영’ 등으로 총 3개 시설의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임
- 질 의: 위탁업체 선정 방법은
- 답 변: 문화체육시설은 문화재단에 위탁 또는 공개경쟁으로 입찰할 예정이고, 데이케어센터는 공개경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, 카페는 자활센터에 있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자활기업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 강남구 자활기업에서 운영할 예정임
- 질 의: 하루에 이용예상 인원수는
- 답 변: 2017년도에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이용자가 월 1,100명 정도로 예상됨

1)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. 경제적 효율성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

7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

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7. 11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어르신복지과

1. 제안이유

도심형 종합복지시설인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내 마지막 단계로 건립중에 있는 세곡동 커뮤니티 센터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5조 제1항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

○ 필요성

- 세곡동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「세곡동 커뮤니티센터」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
- 데이케어센터 운영
-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운영

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소재지 : 강남구 세곡동 521-1일대
- 대지면적 : 3,943.90㎡
- 신축규모 : 지하1층~지상2층(연면적 3,847.27㎡)
- 지원시설

구분	주요시설	시설면적	사업내용
2F	·중강의실(42석) ·소강의실(12석) ·작은도서관 ·북카페 ·독서실(11석) ·사무실 ·헬스장 ·샤워목욕탕(남) ·샤워목욕탕(여) ·공용공간	111.12㎡ 35.10㎡ 69.86㎡ 68.16㎡ 21.82㎡ 35.32㎡ 140.25㎡ 62.33㎡ 63.78㎡ 330.3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	·데이케어센터 (정원40명)	409.77㎡	전문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, 데이케어센터 운영
1F	·다목적강당(130석) ·공용공간	117.62㎡ 483.46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등 운영
	·카페	13.53㎡	강남구 자활기업, 카페운영
B1	·다목적체육관 ·기계실 ·전기/발전기실 ·지하주차장(29면) ·공용공간 ·중앙제어실	190.86㎡ 168.75㎡ 152.09㎡ 1,054.17㎡ 293.99㎡ 24.93㎡	문화·체육 등 다양한 강좌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인 북카페 등 운영
계		3,847.27㎡	

■ 건물 조감도 및 위치도

<p><건물 전경></p>	<p><위치></p>

마. 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방식

사업명	수탁자 선정방식	운영기간	근거법률	비고
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(강의실, 도서관, 북카페, 헬스장, 다목적체육관 등)	비영리법인 (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)	5년	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-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호	관리 위탁
데이케어센터 운영	전문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(공개모집)	5년	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	민간 위탁
카페 운영	강남지역자활센터 (수의)	5년	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	협약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예산 : 838,841천원(구비100%, 2020년 연간운영비 예상)
- 문화강좌와 체육시설 위탁관리 : 2019.9월 준공 예정으로 3개월분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, 계약 3개월 지연으로 금년도 민간위탁금은 집행사유없음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인건비 (7명)	운영관리비			유지 보수비	비고
			시설관리용역(7명)	일반운영비	시간강사비		
연간운영비	838,841	236,373	278,268	103,400	176,800	44,000	예상
2019.10~12월	170,869	58,280	60,237	20,286	27,066	5,000	집행 사유없음

- 데이케어센터 : 시설이용자 수가 운영으로 예산 불필요
- 카페 : 취약계층의 고용 확보를 위하여 무상임대로 예산 불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노인복지법

제39조(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5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
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20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22.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·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

나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
다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

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

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<개정 2015. 07. 10.>

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,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법인등“이라 한다)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·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
2.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, 상담,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
3.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
4.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
5.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·운영 지원
6.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

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지역자활센터의 설립·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2. 국유·공유 재산의 무상임대
3.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
제18조(자활기업)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상의 사업자로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,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
2. 국유지·공유지 우선 임대
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
4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
5.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